

29. 태권도심사규정

태권도심사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4조에 의한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(이하 "심사") 시행, 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4. 12., 2019. 12. 19., 2021. 9. 29.>

제2조(적용범위) 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,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제2장 심 사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심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3. 2.>

1. "심사"란 태권도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 정도를 측정, 평가받아 국기원의 태권도 품·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2. "급"이란 태권도 수련자에게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2. 4. 12.>
3. "품"이란 만 15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4. "단"이란 만 1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5. "명예단"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.
6. "추서단"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유단자가 타계하였을 경우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7. "품·단증"이란 품·단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. <신설 2016. 4. 12.>
8. "응시자"란 심사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6. 4. 12.>
9. "국가협회"란 국가올림픽위원회(NOC)에 가맹된 각국의 태권도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>
10. "태권도 사범"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국기원의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태권도사범 교육을 이수, 사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2. 4. 12.>

11. "태권도 단체"란 일정 규모 이상의 태권도장(클럽)과 태권도 사범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12. "기관"이란 군경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13. "추천사범"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과 국기원의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태권도사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한 태권도 사범으로서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응시자에 대한 추천 또는 심사시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19. 12. 19., 2021. 9. 29., 2022. 4. 12.>
14. "심사위원"이란 심사의 감독, 평가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6. 4. 12.> <개정 2022. 4. 12.>
15. "심사추천"이란 국기원 심사에 응시하려는 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16. "심사위임"이란 국기원 심사 권한을 위임 계약에 따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심사 업무와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2. 4. 12.>
17. "심사시행"이란 국기원 심사에 대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실기, 이론 등 심사를 실제 행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18. "심사수임단체"란 국기원 심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위임 받은 국가협회, 태권도 단체,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을 말한다. <개정 2016. 4. 12., 2022. 4. 12.>
19. "심사재수임단체"란 심사수임단체로부터 국기원 심사의 권한 중 심사시행에 대한 권한 등을 재위임 받은 태권도 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6. 4. 12.>
20. "유품자"란 국기원 4품 이하 품 보유자를 말한다. <신설 2022. 4. 12.>
21. "유단자"란 국기원 5단 이하 단 보유자를 말한다. <신설 2019. 12. 19.> <개정 2022. 4. 12.>
22. "고단자"란 국기원 6단 이상 단 보유자를 말한다. <신설 2019. 12. 19.> <개정 2022. 4. 12.>
23. "비대면심사"란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영상 및 원격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의 심사를 말한다. <신설 2022. 4. 12.>

제4조(품. 단의 위계) 태권도 품.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삭제 <2016. 4. 12.>
 1. 품의 위계 : 1품부터 4품까지 <개정 2016. 4. 12.>
 2. 단의 위계 : 1단부터 9단까지. 단, 명예단은 1단부터 9단까지, 추서단은 5단부터 10단까지 <개정 2016. 4. 12., 2016. 6. 8., 2022. 4. 12.>
- ② 삭제 <2016. 4. 12.>
- ③ 삭제 <2016. 4. 12.>
- ④ 삭제 <2016. 4. 12.>

제5조(심사의 구분)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1. 승급 심사 :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수련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장에서 시행하는 심사 <개정 2016. 4. 12., 2019. 12. 19., 2022. 4. 12.>
2. 승품 심사 : 만 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. 단, 4품은 만 18세 미

만인 자로 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3. 승단 심사 :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<개정 2016. 4. 12.>

4. 특별 심사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가.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

나.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

5. 명예단 심사 : 단증 보유와 무관하게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단을 수여하기 위한 자격 심사 <개정 2016. 4. 12., 2022. 4. 12.>

6. 추서단 심사 :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고단자가 타계하였을 경우 상위 단을 추서하기 위한 자격 심사 <개정 2016. 4. 12.>

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③ 삭제 <2016. 4. 12.>

제6조(심사위원) ① 국기원은 심사에 필요한 감독관, 심사평가위원 등의 심사위원을 둔다. <개정 2021. 9. 29.>

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국기원은 심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, 심사공정위원회,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② 필요에 따라 별도로 특별심사심의위원회, 심사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③ 제1항,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8조(심사수수료) ① 국기원은 응시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② 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1. 발급수수료 : 품·단의 등록, 품·단증의 발급 및 교부에 수반되는 비용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2. 위임수수료 :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재위임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<신설 2015. 3. 2., 2016. 4. 12.>

3. 시행수수료 :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변동을 및 원가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, 산정하며, 절차와 방법 등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④ 심사수수료는 품·단 및 국가별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
⑤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심사수수료에 합산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6. 4. 12., 2022. 4. 12.>

⑥ 심사수수료 환불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 4.

12.>

제3장 심사시행

제9조(심사의 공고) ① 국기원은 심사시행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0조(응시자격) ① 국기원은 승품·단 연한, 연령, 태권도 경력 및 보수교육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. <개정 2019. 12. 19.>

② 응시결격사유는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태권도 및 국기원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1조(표준심사과목) ① 표준심사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기 : 기본동작, 품새, 겨루기, 격파, 호신술(선택적 시행 가능) <개정 2022. 4. 12.>

2. 이론 : 필답, 논술 <개정 2022. 4. 12.>

3. 구술면접 <개정 2022. 4. 12.>

② 제1항의 표준심사과목 외에 심사과목을 신설, 추가할 수 있다.

③ 제1항,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2조(심사평가) ① 심사평가는 국기원의 표준화된 기준에 의하여 개개의 응시자를 평가하는 방법인 절대평가로 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② 심사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심사의 합격은 각 과목별 합격여부를 종합 판정하여 국기원이 위임한 심사에 대한 결과는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고 국기원이 시행한 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사 심의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④ 제2항,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3조(심사결과 공고) ① 국기원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② 심사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2.>

[본조신설 2016. 4. 12.] [개정 2022. 4. 12.]

제14조(심사결과자료의 요구) ① 국기원은 응시자가 자신의 심사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결과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다.
 ② 제1항에 따른 요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 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5조(심사시행의 점검사항 등) ① 심사시행 단체는 심사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, 심사시행 현장에서 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 1. 심사장 제반시설 및 구비 물품 등
 2. 심사위원, 진행위원, 의료진 등의 구성, 배치 <개정 2022. 4. 12.>
 3. 응시자, 심사위원, 진행위원 등의 복장 <개정 2022. 4. 12.>
 4. 안전 및 질서유지 대책 등
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 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4장 심사위임 및 추천

제16조(심사위임) ① 국기원은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 ② 국기원은 심사의 권한을 심사수임단체에 계약을 통하여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2.>
 ③ 제2항의 위임계약에 따라 심사수임단체는 계약을 통하여 수임된 권한을 심사재수임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12.>
 ④ 제2항의 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 <개정 2022. 4. 12.>
 ⑤ 심사위임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즉시 발생한다.
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17조(책무) ① 국기원은 심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 ② 국기원 또는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2. 4. 12.>
 ③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심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 ④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위임계약에 의거 부여받은 심사권한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단체의 실정에 맞게 심사 관련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여야 하며, 국기원 심사 관련 규정·규칙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제·개정하고 제·개정할 때마다 국기원에 보고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1. 9. 29., 2022. 4. 12.>
 ⑤ 심사수임단체가 위임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기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 4. 12., 2021. 9. 29.>

- ⑥ 심사재수임단체의 심사 관련 운영 및 규정의 제·개정, 시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심사수임단체와의 심사위임계약으로 정하고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재수임단체의 심사 관련 규정의 제·개정, 시행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위임한 경우,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재수임단체의 심사 관련 규정 및 시행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국기원에 보고한다. <신설 2016. 4. 12.> <개정 2021. 9. 29., 2022. 4. 12.>
- ⑦ 제2항,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제18조(심사위임의 취소 등) ①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가 제17조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수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임을 정지, 취소한다. 단, 심사재수임단체의 경우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위임의 정지,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, 2022. 4. 12.>

1. 삭제 <2016. 4. 14.>
 2. 삭제 <2016. 4. 14.>
 3. 삭제 <2016. 4. 14.>
 4. 삭제 <2016. 4. 14.>
 5. 삭제 <2016. 4. 14.>
 6. 삭제 <2016. 4. 14.>
 7. 삭제 <2016. 4. 14.>
 8. 삭제 <2016. 4. 14.>
 9. 삭제 <2016. 4. 14.>
- ② 제1항의 사항은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 - ③ 심사위임이 정지,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의 심사는 심사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. <개정 2015. 3. 2., 2016. 4. 12.>
 - ④ 심사재위임이 정지, 취소된 심사재수임단체의 경우 심사수임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야 한다. 단, 심사수임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이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4. 12.> <개정 2018. 9. 7., 2022. 4. 12.>
 - ⑤ 제1항~제4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8. 9. 7.>

제19조(심사추천) ①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 또는 태권도사범에게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29.>

- ② 심사수임단체는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을 심사재수임단체 또는 등록된 태권도 사범에게 재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9. 29., 2022. 4. 12.>
- ③ 제2항의 태권도 사범과 해외추천사범은 태권도의 특수성인 사제(師弟) 간의 예의와 질서 등을 계승,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 또는 제2항의 태권도 사범이 심사를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, 취소를 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- ⑤ 국기원이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, 취소를 위임한 경우, 심사수임단

체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, 취소를 결정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5장 품·단증 교부 등

제20조(품·단증의 교부) ① 국기원은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 규정 및 태권도심사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국기원장 명의로 품·단증을 발급, 교부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② 명예단증 및 추서단증을 발급,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③ 유품자가 만 15세 이상(4품은 만 18세 이상)이 되어 단으로 자격을 전환, 단증을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단증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④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품·단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⑤ 품·단증을 발급, 교부할 때에는 유품·단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·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단, 유품·단자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 최초로 부여한 품·단 번호를 유지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4. 12.>

제21조(심사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) ① 국기원은 심사 질서 문란행위를 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때에는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② 국기원이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와 관련한 징계를 위임한 경우에는 심사수임단체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징계를 결정한다. <개정 2022. 4. 12.>

③ 제1항,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22조(제출서류 등) 심사 및 품·단증의 발급, 교부 등에 따른 제출서류는 태권도심사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제6장 보 칙

제23조(규정적용)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시행되는 심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4. 12.]

부 칙 <제정 2010. 7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1. 1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의 심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<개정 2012. 11. 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4. 5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5. 3. 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 4. 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 6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 9. 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9. 12. 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1. 9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 4. 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